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2024. 12.



목 차

I. 추진배경	1
II. 현황 및 특성	2
① 조손가족 현황	
② 조손가족 특성 및 정책 필요성	
III.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6
①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연계 강화	
② 정책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조부모 맞춤형 지원 강화	
④ 손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	
⑤ 정책 및 인식기반 마련	
IV. 향후 계획	16
[붙임1] 과제별 추진일정	17
[붙임2] 대책 전/후 지원 혜택[예시]	19

I 추진 배경

- 전통적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생활 양식의 변화, 이혼·재혼 등 가족 유동성 증가 등으로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의 다양화 현상 심화
- 현 정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욕구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
 - * (국정과제 48-4)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과 각 유형 내 아동의 안정적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중

그간 주요정책 및 서비스 지원 사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설('22.7월)
-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22.12월)
-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23.5월)
- 220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족 유형별 가족서비스 제공 등

-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족형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
 - ※ ‘조부모와 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고, 보육 자원의 한계로 정책 지원 내로 유입되지 못하거나, 소외되기 쉬운 상황
- 조손가족의 생활 실태, 지원 욕구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조손가족 실태조사 실시('23), 조손가족 지원방안 연구('24) 및 간담회 등 추진
- 실태조사, 연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손가족 발굴·정책대상 유입, 조부모·손자녀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대책 수립 추진

현장 목소리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손가족 통합적 지원방안 연구(2024)” 등

- “내(조부모 본인)가 아프거나, 손자녀가 아플 때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필요” ('24.8월 조부모 인터뷰)
- “조손가족, 특히 조부모는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 흩어져 있는 정부 서비스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 필요” ('24.11월 정책 간담회)
- “조손가족이 필요한 정책을 이해하고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가족센터 등 현장 담당자를 통한 홍보 강화 필요” ('24.11월 현장 관계자)

II 현황 및 특성

1 조손가족 현황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경우*는 약 11.8만 가구이나,
 - * ('20)117,705가구 → ('21)118,907가구 → ('22)117,912가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조부모와 양육의 대상인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는 4.5만 가구로 전체 조손가족의 38.1%를 차지

최근 3년간 '20~'22년 조손가족 현황

(단위: 가구수, 명)

구분	계(A+B)				조부모 + 미성년손자녀(A)				조부 또는 조모 + 미성년손자녀(B)			
	가구	가구원	조부 모수	손자녀수	가구	가구원	조부 모수	손자녀수	가구	가구원	조부 모수	손자녀수
2020	45,262	132,340	71,868	58,114	26,606	88,275	53,212	34,120	18,656	44,065	18,656	23,994
2021	44,615	130,478	71,095	57,304	26,480	87,774	52,960	33,941	18,135	42,704	18,135	23,363
2022	44,595	129,972	-	-	26,482	87,562	-	-	18,113	42,410	-	-

출처 : 통계청

- 한편, 조부와 손자녀 또는 조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약 1,300여 가구('23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63%(청소년72%) 이하)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이나
 - 예외적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거나, 조부모가 다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포함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또는 65세 이상시 지원 가능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는 **미성인통계이나 약 3천여명(18세 미만 손자녀 (외)조부모 1,783명, 10~17세 손자녀 1,330명)**을 대상으로 **생활수준, 경제상황, 정책육구** 등을 조사한 자료로 이 결과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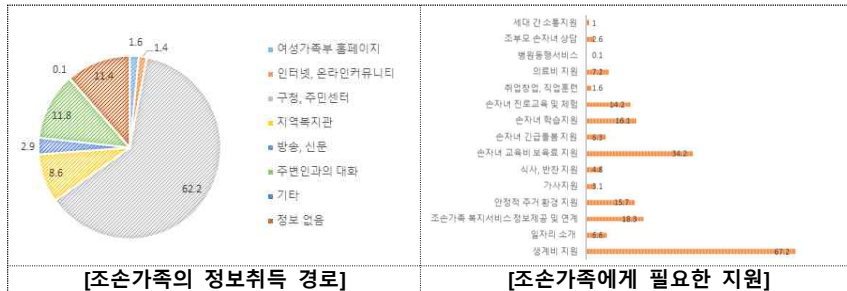
□ 조부모의 열악한 경제·주거·건강, 손자녀의 조부모 돌봄 및 정서 불안, 조손가족의 고립 등 **조손가족의 특성**에 따라 **손자녀 양육·성장**에 취약

○ **(고립·소외)** 가족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손자녀 돌봄을 위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지역사회 내 교류 없이 생활 **多**, **정보접근에 한계***

* 복지서비스 이용시 **33%가 정보찾기에 어려워**하고, 정보취득 경로로 인터넷 이용은 3%에 불과, 구청 또는 주민센터가 **62.2%**로 가장 많았음

- **조손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에 이어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18.3%)** 수요가 높은 상황

* 생계비(67.2%), 손자녀 교육비·보육료(34.2%) 등



출처: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 정책지원 체계 내 유입되지 못해 위급시 또는 위급으로 발전하기 전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뤄지는데 한계 존재

조손가족에 대한 발굴, 정책홍보 강화로 정책대상으로 유입 확대 필요

○ **(경제적 취약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53.4%**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며, 경제활동의 불안정성, 열악한 주거환경 등 양육에 취약한 환경

- 조부모 월평균 근로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73.6%인 등 저소득이 다수*이고, **27.7%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종사자 지위 또한 불안정한 편**

* 100만원 미만 38.2%, 100-200만원 미만 35.4%, 200-300만원 미만 18.0% 300만원 이상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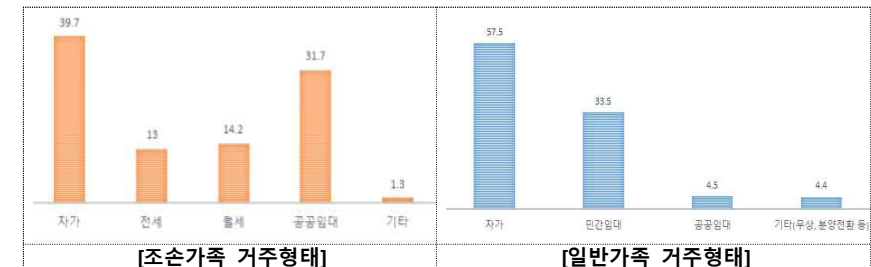


출처: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 조손가족의 거주형태는 **공공임대(31.7%)**의 비중이 일반가구* 대비 **높은 비중**을 보이며, **주거비 부담**이 높고, 노후된 주거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환경 열악**

* 주거 점유: 자가(57.5%), 공공임대(4.5%) 등 (출처: 2022 주거실태조사, 국토부)

※ 조손가족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택의 개량보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2)



출처: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출처: 2022년 주거실태조사

○ **(조부모 고령·건강·법적지위)** 실태조사 응답자 조부모 연령은 평균 68.9세이고, **62.3%가 만성질환 보유**

- **조부모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정작 법적 보호자 지위가 아닌 경우 정책 지원 수혜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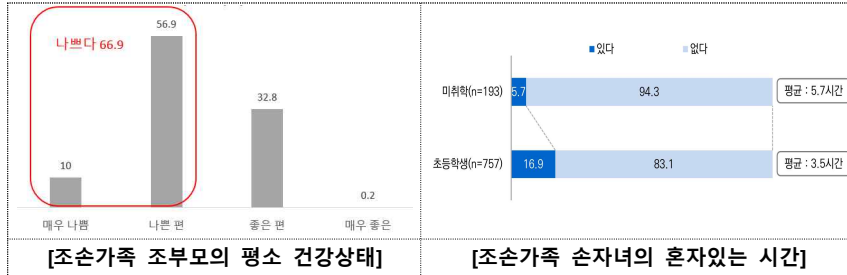
※ 예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양육비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나, 미성년 후견인이 아닌 경우 긴급지원 신청자격 無

○ **(손자녀의 역돌봄 및 정서불안)** 조부모의 특성상 **고령, 건강 문제**로 손자녀가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 혼자있는 시간*, 조부모의 고령, 조손가족이 되는 과정 등을 겪으며 자신이 누구와 살지 불투명한 상황 등 관계의 불안정성 아래 심리적 불안·우울 경험**

* 혼자있는 시간: 미취학 손자녀 하루평균 5.7시간, 초등학교 손자녀 하루평균 3.5시간(실태조사)

** 조손가족 손자녀 중 최근 1년 동안 우울감 경험 응답비율 33.5%(실태조사)



출처: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 생계, 주거, 건강, 돌봄, 학업·정서 지원 등 조부모, 손자녀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 (정책 및 인식 한계)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 등 정책기반이 부족한 현실

- 평소 조손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동네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받음(13.5%), 학교에서 차별(10.2%), 가족 친척의 차별(9.5%) (실태조사)

▷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기반 및 차별해소 등을 위한 인식 개선 필요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해, 조손가족 특성을 반영한 조손가족 맞춤형 과제 발굴 및 지원강화 필요

- ① (발굴·연계) 유관기관을 통한 조손가족 발굴 및 가족센터 연계, 지원 강화
- ② (맞춤서비스) 조부모 및 손자녀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③ (정책·인식개선) 조손가족 특성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인식개선

III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비전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 조성

목표

신속한 발굴·연계와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추진방향

중점과제

추진과제

정책대상 유입확대

- ① 조기 발굴, 연계 강화

- ① 사회보장서비스 정보 연계
- ② 가족센터 중심의 유관기관 협력 강화

- ② 홍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 ① 조손가족 대상 정보접근 편의성 제고
- ② 조손가족 서비스 신청절차 개선
- ③ 조부모 디지털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강화

- ③ 조부모 지원

- ① 기초생활보장 강화
- ② 맞춤형 건강, 심리, 법률 등 지원
- ③ 손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 ④ 손자녀 지원

- ① 학령기 아동 학습지원 강화
- ② 심리·정서지원 강화
- ③ 가족돌봄 손자녀 지원 강화

정책·인식 기반마련

- ⑤ 제도개선, 인식개선

- ① 조손가족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 ② 조손, 한부모가족 등 차별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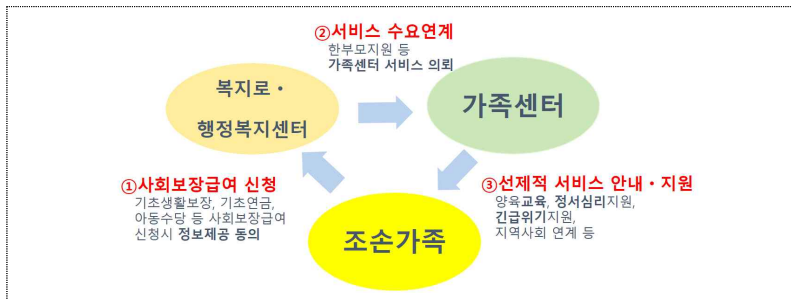
1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연계 강화

◆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 조손가족 조기 발굴·선제적 정보 안내·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확대**

□ **사회보장서비스 정보 연계를 통해 위기 조손가족 조기발견** 여가부, 복지부

-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상담 실시 신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가족센터 연계 동의 서식 마련·시행 및 지자체 담당자에 조손가족 신청자에게 관련 사항 안내토록 조치('24.12)
- 가족센터에 정보 연계시, 가족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전화, 문자 등 선제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상담 및 필요한 가족서비스 정보 안내('25.1월~)

< 사회보장서비스 연계를 통한 가족센터 서비스 지원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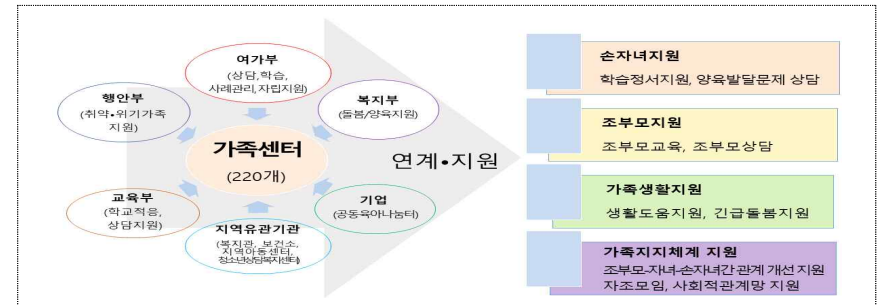
□ **가족센터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발굴·지원 강화**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 가족센터(220개소) 중심의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 운영('25.上) 신규
-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기관, 청소년지원 관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체 구성하여 대상자 발굴, 정보공유, 서비스지원 등을 위한 연계·협력
- 행정복지센터 '찾동이(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로 조손가족 발견 및 지원 강화
- 가족센터 보듬매니저*가 위기, 취약 가정 방문하여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등 서비스 제공
- * 위가·취약가정 방문하여 전문상담 및 맞춤서비스(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긴급위기지원 등) 제공

-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위기 조손가족 발굴 시 가족센터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필요 서비스 제공

※ 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조손가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중이거나, 서비스 제공 만료시점에 놓인 위기 조손가족 아동 및 청소년 발굴시 가족센터 연계·협력

< 가족센터-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조손가족 대상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



2 정책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조부모 특성을 고려한 절차 개선, 정책 홍보 방식 다양화 등으로 정책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조손가족 대상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여가부

-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한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배포('25.下) 신규

* (주요내용)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 조사 및 안내서(서비스 대상, 지원사항, 신청방법(유선전화 중심) 등) 개발 (형태) 리플렛 등 간단하고, 큰글씨, 쉬운표현 등 가독성 높은 형태 (배포)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

-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조손가족 정책정보 제공
-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 주요 청소년정책 홍보 채널(유튜브, SNS, 블로그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책 정보 제공('25.上)

□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개선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 신청기반 서비스의 **신청방식 변경**(‘당사자’ 신청→‘동시’신청 또는 ‘직권’신청)으로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유입 확대**

< 조손가족 해당 당사자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 주요 사례 >

사례	사업명	추진 현황
1	아동양육지원 (여가부)	- (동시신청) 가족지원서비스 필요시(취약 한부모 조손가구에 대한 탈빈곤 등) 시군구에서 가족센터 사례관리팀으로 연계
2	가사간병 방문 (복지부)	- (실거주지 신청) 신청자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3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교육부)	- (동시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시, 교육비 지원 함께 신청

□ 조부모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여가부, 과기부, 방통위

- 가족센터 **조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문해력 제고**
 - * 전국 220개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에서 온가족보듬 사업, 조손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
 - 조손가족 대상 정책 이해도 높이고, 정책이용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부모 대상 프로그램 진행시,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고령층 등 대상**으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전국 36개소)를 통해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의 활용까지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제공**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수요 기관에 찾아가는 교육 제공
- 일상화된 다양한 미디어를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 역량 제고 교육 제공**
 -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제작 교육’과 ‘시니어 미디어 제작단 활동 지원’ 및 전국 8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운영 등

3 조부모 맞춤형 지원 강화

◆ 조부모 대상 ①사회보장 강화, 건강·심리·법률 등 ②맞춤형 지원 강화 및 ③손자녀 돌봄·양육 지원 확대

① 조부모 대상 사회안전망 확대

□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부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 32%→35%), 재산기준 완화*(자동차·주거)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완화
 -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완화(‘25년~)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 (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4인 기준 183만 → 187만, 2.1%)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
 - * 소득 기준 (‘24) 430 → (‘25) 457만, 금융재산 기준 (‘24) 1,173 → (‘25) 1,201만(4인 기준)

□ 주거안정 지원 확대 국토부, 여가부

- 저소득 조손가족 공공임대주택 지원 지속 추진
 -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문턱제거·안심센서 설치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적용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年 1천호 → 3천호)에 따라 조손가족 입주 기회 확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조손가족 입소 가능토록 개선** 신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조손가족 포함토록 지침 개정(‘25.1월~) 및 조손가족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양육 지원, 상담 등 지원

< 조손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기능 및 입소기간 >

유형	주요 기능	개소수 *24.12월	입소기간(연장)
양육지원	만 6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조손가족)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38	3년(1년 이내)
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과 자녀의 교육·학업·자립 주로 지원	47	5년(2년 이내)
일시지원	배우자 학대 등의 이유로 단기간 입소한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비밀보장과 특별 지원을 제공	9	6개월(1년 이내)

② 조부모 맞춤형 건강·심리·법률 등 지원 강화

□ 조부모 건강 지원 강화 복지부, 금융위, 여가부

○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조손·독거·고령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지자체 전담인력(사회복지사 등)이 방문, 통원 등을 통해 적절한 돌봄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제공 및 연계

- 소득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 부과 시범사업 추진('25년 계속)

※ (현행) 소득 하위 70%로 대상 제한, 본인부담 없음 → (개선) 소득 제한 없이 돌봄 필요 노인으로 대상 확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적용

○ 조손가족 등 어르신 가정 대상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제공 강화

* 화재센서, 응급호출기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서비스 신청, 승인 필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가정내 설치 장비>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 고령자 대상 AI·Io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지역 확산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보건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대상 건강측정기기 배포(혈압 등 기준치 초과시)를 통해 건강정보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 '24년 178개에서 '25년 200개, '27년까지 전국(261개) 보건소로 확대

< AI·Io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연동 건강측정기기 예시>

			
활동량계	체중계	자동혈당계	혈압측정기

- 저소득 조손가족 18세 미만 아동, 부양자(친권자) 대상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서민금융진흥원) 및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홍보 강화
- 조부모 대상 정책 안내 리플렛 등 활용하여 정보제공 등 홍보 강화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제3기('24.7.31~27.7.30) 보장내역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단위 : 만원)
부양자	상해 후유장해(3~100%)	3,000
	질병 후유장해(3~100%)	3,000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3,000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30
아동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3,000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5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15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500
	수술비	8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
	식중독 입원 일당, 입원 4일 이상시	7
	폭력피해 위로금	100

* 보험료 무료, 별도 가입절차 없이 대상자는 모두 가입

□ 조부모 심리·정서 및 법률 지원 등 강화 여가부

○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등 맞춤형 사례관리 및 생활 도움 지원 등 긴급 지원 강화

-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지지와 격려, 정보공유 등을 위한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제공, 찾아가는 상담 등 지원
- 조손가족의 건강상태 악화 등 긴급·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 가정당 연 90시간 이내(장애, 2자녀이상 가정은 50%범위 내 연장 가능)

○ 조부모 미성년 후견인 지정, 미성년 손자녀 부모 채무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 서비스 지원 강화 신규

- 미성년 후견인 제도 안내 등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및 관련 정책 홍보 추진
-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③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 취학 전·후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강화 교육부, 여가부

- ‘나홀로 아동’ 등 조손가족의 긴급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해 영유아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등 단기간 돌봄 확대
 - 필요한 시간(일시 긴급한 돌봄 수요 등)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23) 1,030개반 → (‘24) 2,315개반 → (‘27) 3,600개반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자신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봄 활동 수당 지급 추진(‘25.1월~) 신규
- ‘늘봄학교’ 전국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 확충, 방학기간 운영 등 학교 중심의 초등교육·돌봄 강화
 - 전국 모든 학교(6,185개) 1학년(‘24) → 1·2학년(‘25) → **쏠학년(‘26)**으로 대상 확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추진
 - * (‘25년)초1~2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전학년) → (‘26년)초3 → (‘27년)초4~6
- 이웃 간 공동체 돌봄, 손자녀 양육정보 공유 등 공동육아 문화 확산 및 시설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강화**
 - * 민관 협력을 통해 방과후 일시돌봄, 야간·주말 운영,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24.12 기준 435개소)

□ 조부모 양육 교육 및 저소득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확대 복지부, 여가부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부모 대상 양육 교육(복지부 양육코칭 시범운영, ‘25~) 확대
- 저소득 조손가족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상향** 및 조손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조손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용 변화>

구 분	기준 중위소득	변화되는 점	
		‘24년	‘25년
아동양육비	63%이하	월 21만	월 23만원
학용품비	63%이하	중·고등학생 자녀	초·중·고등학생 자녀

- 조손가족 중 친부모 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 제외되었으나, **친부모가 실질적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 예외적 **포함** 추진 신규
 - * (사례) 친부모 소득으로 인해 조손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친부모 가출, 연락두절 등 실질적 부양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등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구 선정 특례 도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규정
- **양육비채권이 있는 조부모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금 지원**(‘25.7월~)

4 손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

◆ 조부모 돌봄, 불안정 등을 겪을 수 있는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 학업지원 및 심리정서 안정지원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 조손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습 지원 강화 교육부, 여가부

- 저소득 조손가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 시도교육청(단위학교 포함)은 법정수급자·저소득층(1~2순위), 학교장 추천(3순위)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1인당 年 평균 60만원 지원 중
- **법정 수급자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대상 방과후학교(초등 늘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조손가족 학생을 학교장 추천***으로 발굴·지원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요령」 학교장 추천 지원(3순위)-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조손가족 학생으로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 조손가족 등 저소득층 우수 학생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24년 중·고등 → ‘25년 초·중·고등까지)
 - * 매월 장학금(25~45만) 장학금 카드 지급(꿈장학금, sos 장학금), 1:1멘토링,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 학업 중단 이후에도 개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교육청, 경찰청, 상담기관 등) 간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상담·교육 지원 강화**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조손가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 멘토 지원 및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 여가부, 복지부

- 조손가족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필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 및 **청소년안전망 내 필요 서비스 연계**

* (비대면)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전화문자 상담, 청소년1388 포털에서 온라인 상담 제공
(대 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위기유형별 상담,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고위 기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종합심리평가, 자살·자해 등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조손가족 청소년 정서 지원 강화

* 청소년복지심의실무위원회에 가족센터 참여 독려하여 심리정서 지원 필요 청소년 연계 활성화

-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 **심리·정서적 위기 손자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 상담치료 지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지역별 바우처 사업*)를 통한 조손가족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 지원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조기개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서순환 프로그램 제공(지역별 이용자 선정기준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 가족돌봄 손자녀 지원 강화 복지부, 여가부

-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조손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 돌봄대상자(19세 이상,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령 무관)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24) 122개 시·군·구 → ('25) 130여개 시·군·구

-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3~39세 가족돌봄 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

※ ('24) 17개 시·도 185개 시·군·구 → ('25) 17개 시·도 200여개 시·군·구

-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일상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 조손가족 발굴 및 일상돌봄서비스 안내 및 필요시 연계 추천, 일상돌봄서비스 홍보 강화

5 정책 및 인식기반 마련

□ 조손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여가부, 통계청

- **조손가족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 신규

* 現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실태조사' 추가, 3년마다 실시('27년)

-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년 현황** 파악 신규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시('25) 가족돌봄 청년 현황* 파악

* 만 9세 이상,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장기간 돌보는 가족(친인척) 유무 및 돌봄시간 파악

□ 조손·한부모가족 등 차별 인식 개선 여가부

-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수용성과 차별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조손가족·한부모가족 편견 해소 내용 포함

- '한부모가족의 날(5.10.)' 등 계기 **민관협업**을 통한 조손가족·한부모 가족 인식개선 활동 추진

IV 향후 계획

- '지역 내 취약 위기조손가족 집중 발굴기간' 운영 ('25. 3~4월)
- 조손가족 대상 **정책안내서** 제작·배포 ('25. 6~8월)
- 대책 **세부과제 이행 점검** ('25. 7~8월)

붙임1	과제별 추진일정
------------	-----------------

주요 정책과제	소관부처	시기
1.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연계 강화		
1-1. 사회보장서비스 정보 연계		
① 위기 조손가족 조기발견	여가부, 복지부	'25. 상
1-2. 가족센터 중심의 유관기관 협력 강화		
① 지역 내 취약 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여가부	'25. 상
② 행정복지센터 '찾동아' 등 연계, 찾아가는 가족센터	여가부, 지자체	'25
2. 정책 홍보 등 서비스 접근성 제고		
2-1. 조손가족 정책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① 조손가족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	여가부	'25. 하
② 가족상담전화 등을 통한 조손가족 정책정보 제공	여가부	'25
③ 청소년정책 홍보채널 활용 정책 홍보	여가부	'25 상
2-2. 조손가족 서비스 신청절차 개선		
①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개선	여가부, 관계부처	'25
2-3. 조부모 디지털 역량 강화		
① 조부모 대상 디지털 배움터 제공	과기부	'25
② 조부모 대상 미디어역량 제고 교육 제공	방통위	'25
3. 조부모 맞춤형 지원 강화		
3-1. 기초생활보장 강화		
① 생계급여 지원 강화	복지부	'27
② 긴급지원 강화	복지부	'25
3-2. 주거안정 지원 확대		
①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국토부	'25
② 조손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여가부	'25. 상
3-3. 조부모 건강지원 강화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복지부	'25
② 어르신 가정 대상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제공	복지부	'25
③ 고령자 대상 AI·IoT기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복지부	'25
④ 저소득 조손가족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홍보 강화	여가부, 금융위	'25
3-4. 심리·정서 및 법률지원 강화		
① 손자녀 돌봄 조부모 심리·정서 지원 등 사례관리	여가부	'25
② 조부모 미성년 후견인 지정 등 법률서비스 지원	여가부	'25
3-5. 취학 전·후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강화		

주요 정책과제	소관부처	시기
① 영유아 시간제보육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교육부, 여가부	'25
② 늘봄학교 중심의 초등돌봄 강화	교육부	'25
③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강화	여가부	'25
3-6. 조부모 양육 교육, 아동양육비 등 확대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부모 대상 양육 교육	복지부	'25
② 저소득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지원 확대	여가부	'25
③ 조손가족 지원대상 특례 도입	여가부	'25. 상
④ 양육비채권 있는 조부모 양육비 선지급금 지원	여가부	'25
4. 손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		
4-1. 학령기 아동 학습지원 강화		
① 조손가족 아동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부	'25
② 꿈사다리 지원대상 확대	교육부	'25
③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지원 강화	여가부	'25
4-2. 조손가족 손자녀 심리·정서 지원 강화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연계	여가부	'25
② 심리·정서적 위기 손자녀 지원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	'25
4-3. 가족돌봄 손자녀 지원 강화		
①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부	'25
②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부	'25
5. 정책·인식기반 마련		
5-1. 조손가족 현황파악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①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여가부	'27~
② 가족돌봄 청년 현황 파악	통계청	'25
5-2. 조손, 한부모가족 등 차별 인식 개선		
① 조손·한부모가족 등 차별 인식 개선	여가부	'25

구 분	개선 전(2024년)	개선 후(2025년)
사회보장서비스·가족서비스 연계 및 지원강화	A씨(65세)는 손자녀(12세)를 홀로 양육하고 있음 점점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손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되고, 손자녀 양육도 지원받고 싶지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함 방과후 학교 수업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법정 수급자가 아닌데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일정하지 않아 수업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됨	A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 민센터에 갔다가 가족센터 서비스 연계도 동의를 하고 옴. 이후 가족센터로부터 서비스안 내 연락이 왔고, 보듬매니저를 통한 손자녀 학업지원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조부모 자조모임등 양육에 도움을 받음 한편, 법정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족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손자녀의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자유수강권 지원을 신청함
주거·돌봄·양육 지원 * 조손가족 지원가구 선정 특례 도입,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손자녀(4세)를 키우는 B씨(66세)는 생계활동을 해야 하지만, 손자녀를 맡길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상황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면 매월 아동양육비 등 지원받을 수 있지만, 조부모뿐 아니라 아동의 부모도 소득기준(중위 63% 이하)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함	부모의 가출, 연락 두절로 인해 아동의 실질적 양육을 조부모가 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해져 B씨는 ①아동양육비를 받고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당 월 21만원(24)→월23만원(25)인상, 5세 이하아동양육 조손가구는 추가 5만원 지원(전년동) ②손자녀와 함께 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③일을 하는 동안 시설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